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완도금일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2. 12. 23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| 제재대상 | 제재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임 · 직원 | 경고 및 변상 : 4명 |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농신보 대손판정 불인정으로 부실채권 발생

- 1급 이OO 외 3명은 2021.10.13. 차주 조OO에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어업자금 대출 10,400천원 취급할 당시, 차주가 동 대출금으로 본인의 타 신용대출을 상환할 목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함. 이후 2022.10.28. 관리기관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 으로부터 ‘금융기관 신용채권 상환’ 목적의 대출은 면책항목에 해당함을 사유로 대손판정 불인정 통보받아 결과적으로 9,066천원의 손실이 초래됨

< 관련법규 >

1.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」 제1편제1장제2조(적용범위), 제12조(보증책임의 면책)
2. 「신용보증약관」 제3조(신용보증관계의 효력) 제2항, 제14조(면책사항), 제15조(면책범위)
3. 「신용보증면책기준」(직접보증용) 면책항목 제3항(타 채권 충당)